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건 기록 송부의 비밀엄수 대상 배제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8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사건 기록 송부의 비밀엄수 대상 배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사건 기록 송부의 비밀엄수 대상 배제

☐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비밀엄수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u>경우</u> 또는 <u>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u>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밀엄수) ----- ----- ----- ----- ----- ----- <u>경우,</u> <u>증권선물위원회</u> ----- ----- ----- ----- ----- ----- ----- <u>경우 또는 증권</u> <u>선물위원회가 제31조의2에 따른 법원의 요구로 관련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u> ----- -----.
1. ~ 5.(생략)	1. ~ 5.(현행과 같음)

□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자산총액 · 매출액 · 종업원 수 등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의 대상임.¹⁾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22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4만 1,212개사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2,642개사와 비상장법인 3만 7,947개사 등 4만 589개사, 유한회사의 경우 623개사임.

[표1]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사, %)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소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2	819	1,591	132	2,542	34,411	36,953	566	37,519
2023	833	1,680	129	2,642	37,947	40,589	623	41,212
증 감	+14	+89	Δ3	+100	+3,536	+3,636	+57	+3,693
(증감률)	(+1.7)	(+5.6)	(Δ2.3)	(+3.9)	(+10.3)	(+9.8)	(+10.1)	(+9.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24.1.31.)

-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증선위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선위는 감사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보고서의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를 담당함.²⁾

2)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과건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증선위는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주권상장 법인의 감사인 등에 대한 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장, 비상장회사 등 여타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각각 위탁하고,³⁾ 감리등의 수행결과는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하게 됨.⁴⁾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2.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 한편,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사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⁵⁾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심사 자료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자료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자료 등의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더라도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3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법원이 증선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1조의²⁶⁾ 신설).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감리위원회의 설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결과에 대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5조에 따른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그런데, 증선위가 신설된 제31조의2에 따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0조⁷⁾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증선위의 사건 기록 송부를 위촉시켜 법원의 사건 기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제31조의2에 따라 증선위가 사건 기록을 송부에는 직무상 비밀엄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위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

○ 법 제31조의2 신설의 입법취지⁸⁾,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형법」 제127조⁹⁾에 따른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¹⁰⁾ 등을 종합적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10827)에서는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을 제안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9)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0)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

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 제31조의2에 따른 증선위의 사건 기록 송부 행위를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으나,

- 증선위가 비밀엄수 위반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법원의 사건 기록 요구에 따르지 않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두 조항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 기록 송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제거되어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① 법 제31조의2 신설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②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증선위의 사건 기록 송부행위는 비밀엄수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③ 소송 과정에서 모색적 증거 신청¹¹⁾ 등 제도 남용

에 위협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주장하지 않고 먼저 증거신청부터 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구체적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는 것

가능성 및 정보의 유출 우려로 피감리자가 감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④ 법원의 사건 기록 송부 요구와 함께 해당 행위에 대한 비밀엄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